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나명하* · 홍윤순** · 김학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Natural Monument Design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Na, Moungh-Ha* · Hong, Youn-Soon** · Kim, Hak-Berm**

*Na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 began preserving and managing natural monuments in 1933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but South and North Korea had to establish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separately because of the divisio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atural monument design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between 1933 and 2005 to introduce advanced policies for Oneness-Kore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According to data of December 2005, South Korea has 358 and North Korea has 474 natural monuments. North Korea has 116 more natural monuments than South Korea. In addition, over half of South Korea's designations are plants, whereas North Korea's designations are relatively well-balanced.

Both South and North Korea designate plants (mostly trees) that are old and large. However, South Korea emphasizes the historical value of village forests, contrary to economic value in North Korea. Also, North Korea preserves many traditional fruit trees which have not been well-preserved in South Korea. As for animals, South Korea designates migratory wild animals by type and not by region to protect them at a national level, whereas North Korea designates the specific habitats of each type of wild animal. In addition, North Korea protects each region's cattle and chickens to preserve native traits of domesticated animals. Geologically, North Korea preserves 18 hot springs and 11 springs, whereas South Korea has none. Geographically, North Korea preserves 81 waterfalls, lakes, etc.

In the conclusion, advanced natural monument manag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is necessary to achieve effective preservation of natural monuments.

Key Words: Natural Monument Content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는 개념이 '자연보호의 상징'에서 출발하였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왔으나, 각국에의 전파과정

을 통하여 여러 특징 역시 부가되어 왔다. 즉, 특정장소에만 존재하는 '특이성'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성', 그리고 역사적 인물·사건·민속·신앙 등 그 나라의 '향토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다원적

Corresponding author: Moungh-Ha Na, Na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aejeon 302-701, Korea, Tel.: +82-42-481-4986, E-mail: naha3542@hanmail.net

개념이 복합된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자연물 이전에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민족의 유산'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유구한 민족사를 공유해온 우리의 경우, 50여년이 넘는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남·북한 천연기념물간의 부분적 공유 특성과 많은 차이를 노정하고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에 대한 자료구득이 어려웠던 까닭에, 관련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¹⁾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남북협력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학술교류가 이루어진 결과, 나명하 등(2007)은 남·북한 천연기념물 관리제도의 상황을 최근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관리제도에 주목하였던 상기 연구에 뒤이어 이들 제도에 의해 지정된 세부내용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제도와 실행측면에 내포된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의 보완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로 인해 변화된 남·북한 천연기념물의 지정내용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토록 한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자연적·역사적·문화적 경관가치를 탐구하는 조경학 연구발전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통일 후 천연기념물 지정통합방안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인 1933년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이 제정·도입되고부터 현재까지의 천연기념물 지정변화를 통시적으로 파악하면서 특히 분단 이후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하에서의 지정내용과 그 차이에 주목토록 한다. 이에 일제강점기로부터 북한의 자료가 입수된 200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남·북한에서 각각 지정된 천연기념물²⁾을 연구의 대상과 범위로 한다.

한편, 본 연구가 주목하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내용은 당연히도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2007년 6월 선행연구를 통해 제도측면의 상호비교를 시행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운용결과인 지정내용을 시기·지역·세부유형 등의 정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 내용측면에서 상호 비교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에 있어 문헌 및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이 주요 방법론이 될 본 연구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남·북한의 자료를 검토한다. 즉, 문화재청 간행물·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천연기념물편·남·북한 천연기념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자료·북한에서 입수한 천연기념물 관련연구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2005년 남·북 교류사업으로 문화재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부·북한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함께 제작한 '우리의 천연기념물'(CD자료) 등 현재까지 입수한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1) 일제시대와 분단이전

오늘날 천연기념물의 자원 중 대표적 유형을 이루는 노수명목(老樹名木)에 대한 조사³⁾는 천연기념물 관련제도가 마련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33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칙령 제224호)'이라는 관련제도를 시행하여 이 제도에 의해 1945년 해방까지 고적 및 명승·명승 및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등이 지정되었다(장호수, 2002: 285). 한편, 일제에 의한 제도시행 이후, 1934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16건(동물 5건, 식물 11건)을 지정한 이래, 1943년까지 일곱 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146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그 지정내역을 시·도별로 파악하면 표 1과 같다.

2) 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광복과 함께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즉, 해방이후에도 이 법에 의해 8건의 천연기념물이 추가지정되다가 남한 천연기념물관련행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16호)'은 1962년 1월 10일 뒤늦게 제정 공포된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1962년 12월 3일에는 구법에 의해 지정되었던 것 중 북한지역에 소재한 36건과 그간 멸실되거나 지

표 1. 일제시대의 남·북한지역 천연기념물 지정건수

남한지역		북한지역	
시·도별	지정	시·도별	지정
서울특별시	9	황해도	9
부산광역시	1	평안남도	5
대구광역시	1	평안북도	6
강원도	8	함경남도	5
경기도	8	함경북도	6
충청북도	9	경기도	3
충청남도	9	강원도	2
전라북도	8		
전라남도	25		
경상북도	17		
경상남도	9		
제주특별자치도	6		
계	110	계	36

정가치를 상실한 20건 등 56건을 제외한 98건을 당시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 지정하였다(문화재청, 2003: 57). 이후 1963년부터 2005년까지 311건을 지정하면서 수목의 고사 등으로 가치를 상실한 51건을 해제하였다. 이 결과 2005년 12월 31일 현재 남한에는 달성의 측백수림을 비롯하여 총 465건의 지정과 107건의 해제를 통하여 358건이 지정되어 있다.

3)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광복이전의 천연기념물 146건 중에는 북한지역 소재의 천연기념물 36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해제내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초기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중앙년감(국제생활사, 1956: 448-450)중 '명승·천연기념물 일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북한에는 일제시대에 지정된 북한지역 천연기념물 36건 중 33건을 포함하여 총 43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1986년에 발간된 북한의 자료 리홍섭(1986)의 지리상식백과 I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은 시·도별로 모두 224건이 지정되어 있고, 식물 157건, 동물 62건 지질·광물 5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18건만이 수록되어 있어 천연기념물이 총망라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생한 그 동안의 자료(조선중앙년감, 지리상식백과 등)를 근거로 정리하면 1986년까지 314건이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1993: 402).

다행히 2005년에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남·북한 천연기념물을 한 장의 CD로 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현재 지정된 북한의 천연기념물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천연기념물에 관한 기록 등을 근거로 정리한 결과는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에 의하여 룡라도 산벚나무와 젓나무 등 474건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표 2는 남·북의 시대별 천연기념물 지정건수를 파악한 내용이다. 이 내용 중 1933년부터 1962년 이전까지는 남·북한에 소재한 천연기념물의 전체 개소이며, 1962년 이후 남한의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북한 소재 천연기념물과 멸실 등으로 가치를 상실한 천연기념물을 해제한 후 남한에 있는 천연기념물만의 지정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남·북한 천연기념물의 시대별 지정건수

구분	년도						
	1933	1937	1943	1956	1962년 이전	1986	2005
남한	16	52	146 (남한지역 110, 북한지역 36)	-	154	258	358
북한			43	314		474	

2. 유형별 지정내용비교

1) 지정개괄

남한의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 및 광물·천연보호구역의 4개 유형으로 대별된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동물분야에서 77건(22%)이 지정된 반면, 식물분야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233건(62%)이 지정되어 있다. 이는 당산목·신목·성황림 등의 예에서 보이듯, 우리의 삶과 수목요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까닭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지질분야의 지정이 48건(13%)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남한 내 자원의 한계성에 기인하기보다는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호할 만한 자원이 풍부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정지역을 천연기념물의 한 유형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현재 10건(3%)이 지정되고 있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동물·식물·지리·지질의 4개 유형으로 천연기념물을 분류하고 있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북한 천연기념물의 지정내역 중 동물분야는 남한보다 다소 많은 106건(22%)이다. 식물분야의 천연기념물은 남한의 경우와 같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나, 62%를 점하는 남한의 식물분야와 달리 북한의 통계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로 나타나 한 유형의 편중현상이 덜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남한에서의 지질에 해당되는 분야를 지리와 지질로 따로 분류·지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 중 지리분야에는 81건(17%), 지질분야에는 72건(15%)이 각각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두 유형을 합할 때 153건(32%)에 달해 남한보다 풍부하면서도 다양하게 지정·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동물분야 천연기념물의 세부유형 중 포유류가 30건(28.3%)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에서의 비율은 6.3%에 달한다. 한편, 식물분야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노거수가 158건(73.5%)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남한에서의 노거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천연기념물에서의 점유율은 33.3%로 남한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우리와 동일하게 천연기념물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이룬다.

지리분야의 세부유형 중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은 43건(53%)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에서 9.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지질분야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화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 21건(29.2%)으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천연기념물에서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 남·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남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지정내용 중 143건(63%)을 점유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노거수의 지정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표 3. 남한의 유형별 천연기념물 지정내용(2005년 말 기준)

식물(223)					동물(77)										지질 및 광물(48)				천연 보호 구역	계
노거수	수림지	자생 북한지	자생지	희귀 식물	곤충	도래지	번식지	산호	서식지	양서류	어류	조류	포유류	암석	천연 동굴	화석	일반 지질			
143	30	13	18	19	3	6	15	2	7	1	6	27	10	3	13	15	17	10	358	

표 4. 북한의 유형별 천연기념물 지정내용(2005년 말 기준)

식물(215)						동물(106)							지리(81)			지질(72)					계		
노거수	수림지	자생 북한지	자생지	해양 식물	희귀 식물	곤충	도래지	번식지	서식지	어류	조류	포유류	지형	폭포	호수	천연 동굴	담소	암석	약수	온천		화석	지층
158	11	3	28	1	14	2	4	18	29	10	13	30	43	18	8	6	6	17	11	18	21	5	474

표 5. 남한의 노거수와 수림지 천연기념물 지정내역

구분	세부유형	지정배경	대표사례
노거수	기념목(記念木)/ 명목(名木)	· 성현·왕족·위인이 탄생했을 때 기념하기 위해 심은 나무 · 왕실에서 당상직을 하사한 나무도 있으며,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 또는 신비 적 전설을 가진 것 등	· 속리의 정이품송, 용문사의 은행나무 등
	신목(神木)	· 부군목(府君木) 또는 장군목(將軍木)이라고도 함. · 나무에 신령이 거주하거나 수목 그 자체를 신체로 취급해 그 아래에 제단을 설치하고 가족 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제사를 올렸던 나무 등	· 부여 내산면의 은행나무, 제주시 곰솔, 금산 보 석사의 은행나무 등
	당산목(堂山木)	· 성황목 또는 서낭나무, 당산목(堂山洞)이라고도 함. · 대개 이 나무 곁에 신당(神堂), 당우(堂宇), 서낭당 등을 만들어 숭앙한 나 무들이 해당됨.	· 금산 행정의 은행나무, 청원 강희면의 읍나무, 지라산의 천년송, 부산 수영동의 푸조나무 등
	정자목(亭子木)	· 향교·서당·활터·별장 등의 가까이에 녹음 또는 풍치를 목적으로 심은 나무	· 강진 병영면의 은행나무, 함양 학사투의 느티 나무 등
수림지	성황림(城隍林)	· 숲 안에 성황당(서낭당, 당집 등)이 있어 숲이 마을을 보호하여 준다고 믿 어온 숲	· 원주의 성황림, 주도의 상록수림, 마량리의 동 백나무 숲 등
	호안림(護岸林)	· 홍수 때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제방을 보호함으로써 마을을 안전하게 하 려는 숲 · 주로 대상(帶狀)의 형태로 분포함.	· 담양 관방제림, 영천 자천리의 오리장림 등
	방풍림(防風林)	· 주로 해안가나 바람이 많은 곳에 조성되어 강풍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함. · 호안림과 같이 줄나무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대부분임.	· 의성 사촌리의 가로 숲, 무안 청천리의 팽나무 와 개서너무의 줄나무 등
	어부림(魚付林)	· 바닷가에 조성되어 있는 숲으로 해안의 강풍을 막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는 수림. · 마을사람들은 이러한 숲에 대부분 풍어제를 지냄.	· 불건방조 어부림, 예송리의 상록수림, 미조리의 상록수림 등
	보해림(補害林)	· 풍수지리 측면에서의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숲 · 화산(火山)인 마을 앞산에 불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심었음	· 함평 대동면의 줄나무, 성주 경산리의 성밖 숲 등
	역사림(歷史林)	· 숲과 관련된 특별한 고사나 전설 등이 전해지는 숲	· 함양 상림(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조림한 숲) 등

아울러 남한의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중 수림의 희귀성·유용성·지역성·학술성 등에 의해 35건의 수림지가 지정되어 있는 바, 그 대표적 유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남한의 경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평의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백양사의 비자나무 분포북한지' 등 13건(5.8%)을 자생북한지 유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달성의 측백수림', '통구미의 향나무 자생

지', '양구의 개느삼 자생지' 등 18건(8.1%)을 자생식물자원 유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물천연기념물 중 희귀식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19건(8.5%)으로 '괴산의 미선나무 자생지', 제주도 '신예리의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도의 한란' 등이 있다(문화재청 2003: 17-19).

한편, 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215건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158건(73.5%)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역을 이룬다. 우

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이상화와 관련되어 지정된 나무로서 김일성이 직접 심었다는 '릉라도 산벚나무와 잣나무'(천연기념물 제1호)가 대표적인 유형을 이룬다.⁵⁾ 아울러 김일성이 직접 심은 나무 이외에 그가 이듬지어준 나무들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성산 향오동나무'의 경우, 개오동나무의 이름을 김일성이 개명한 경우이다.⁶⁾ 그 외에도 김일성이 은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은정 배나무', '대성산 모란'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북한의 애국투쟁사와 관련된 '3·1 밤나무', '이천 영웅 은행나무', '은를 황목련(일본목련)' 등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1900년대 이후에 외래수종으로 들어와 식재된 금송, 백합나무, 히말라야시다 등도 지정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자연환경에 적응되어 자라는 식물 중 학술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정배경의 측면에서 남한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중 수립지는 11건(5.1%)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풍림(防風林)으로 '장송 소나무방풍림' 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칠산반도 바닷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수립지는 바닷바람을 막아 농사를 짓기 위해 농민들이 1960년경에 식재하기 시작하여 자란 숲이다. 또한, 풍치림(風致林)으로는 룡산리 동명양릉 주변의 '룡산리(무진리) 소나무림' 과 금강산의 어귀퉁이를 돌구는 온정리 창터부락을 보호하고 있는 '창터 소나무림', '내금강 잣나무림'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수립지 천연기념물은 많은 경우, 경제림(經濟林)을 대상으로 한다. '룡포 가는잎소나무림(스트로브잣나무)', '맹산 흑송림(곰솔)', '고성 참대(왕대)'는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의해 지정·보호되고 있다.

한편, 자생북한지로는 '후창 조릿대군락' 등 3건, 자생지로는 '원정리 해당화군락', '해질보 백리향군락' 등 28건(13%)이 지정되어 있으며, 희귀식물로는 '대성산 미선나무', '금강초롱(금강초롱꽃)' 등 14건(6.5%)이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특이하게 황해남도에 있는 '웅진 참김'이 해양식물로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다.

3) 남·북한의 동물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모두 77건이 지정되어 있는 남한의 동물천연기념물 중 조류가 27건(35.1%)으로 가장 많은 반면, 번식지 15건(19.5%), 포유류 10건(12.9%), 서식지 7건(9.1%), 어류와 도래지 각각 6건(7.8%), 곤충 3건(3.4%), 산호 2건(2.6%), 양서류 1건(1.3%)의 순을 보인다.

북한은 남한보다 많은 106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포유류 30건(28.3%), 서식지 29건(27.4%), 번식지 18건(17.0건), 조류 13건(12.3%), 어류 10건(9.4%), 도래지 4건(3.8%), 곤충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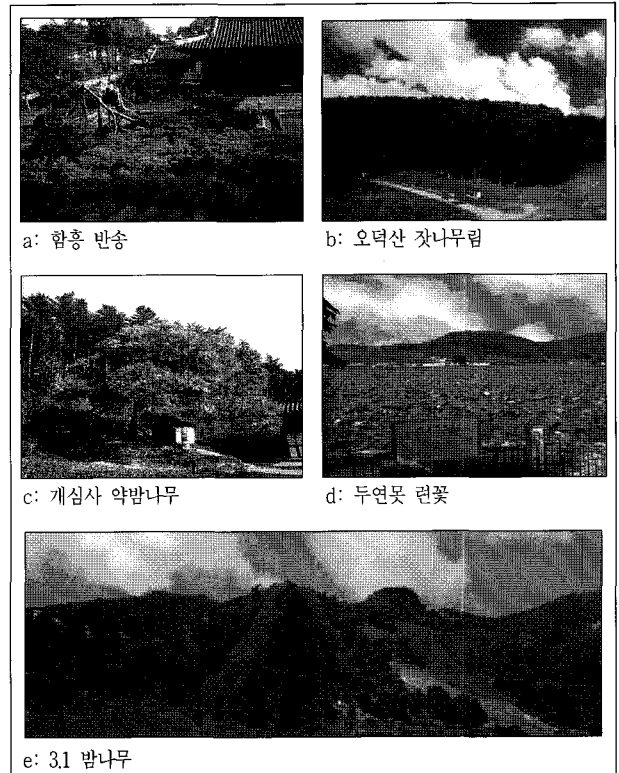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출처: 우리의 천연기념물 CD자료

(1.9%)의 순을 보여 남한과 달리 포유류가 가장 많이 지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고유의 축양동물 지정내용을 보면 남한은 '제주의 제주마',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삼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등 4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은 '홍주닭', '광포종 오리발생지', '풍산개', '세포 조선소', '신파닭', '사철오리' 등 많은 축양동물을 지정하고 있다. '홍주닭'은 강계시 장자강에 위치한 홍주닭공장에서 기르고 있는 닭으로 김일성이 이듬지어준 것이다. '광포종 오리발생지'는 김일성이 1953년 10월 19일 광포를 찾아 오리를 사육할 방법을 찾아주고 오리 알을 보내주어 우수한 새 오리품종이 생겨나게 되었던 발생지이며, 은정이 깃든 곳이라 하여 지정되었다. 한편, 청등오리·청수종오리·밤색종오리들과 교잡으로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진 '사철오리'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다.

동물천연기념물의 지정특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남한은 황새·크낙새·수달·산양 등 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대상을 전국에 걸쳐 43종(種) 지정·보호하는데 반해, 북한은 백두산 호랑이·삼지연 사슴·묘향산 산양·범동 수달 등이 서식하는 일정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남·북한의 지질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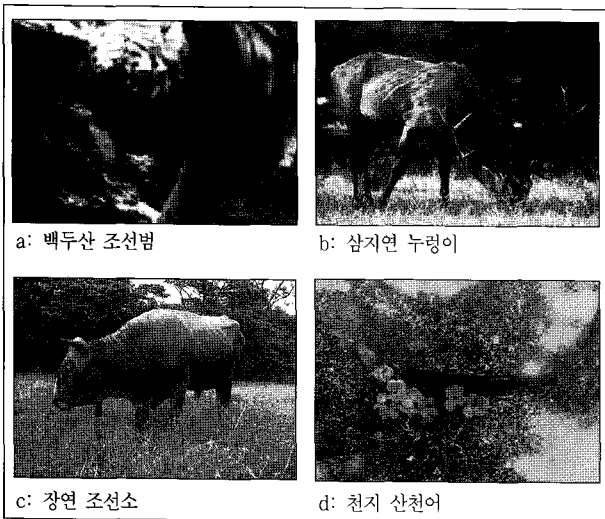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동물분야 천연기념물
출처: 우리의 천연기념물 CD자료

남한의 지질천연기념물로는 일반지질 17건(35.4%), 화석 15건(31.3%), 천연동굴 13건(27.1%), 암석 3건(6.3%) 등 총 48건이 지정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지질과 지리를 따로 구분·지정하고 있는데 지질분야의 것은 화석 21건(29.2%), 온천 18건(25%), 암석 17건(23.6%), 약수 11건(15.3%), 지층 5건(6.9%)의 순을 보인다. 한편, 지리분야에서는 지형 43건(53.1%), 폭포 18건(22.2%), 호수 8건(9.9%), 담소와 천연동굴 각각 6건(7.4%) 등 총 81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정내역을 비교하면, 북한이 남한보다 3배 이상의 지정건수를 보이면서 남한에서는 지정하지 않는 약수, 온천 등의 다양한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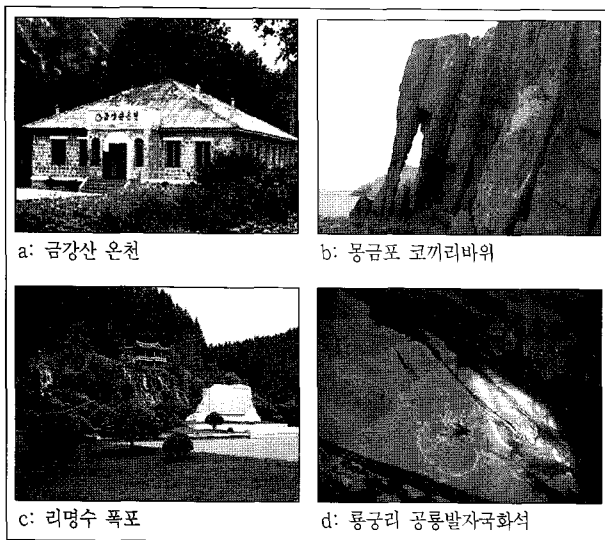


그림 3. 북한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출처: 우리의 천연기념물 CD자료

3. 지역별 지정내용비교

남한의 천연기념물 시·도별 지정은 전국일원에 분포한다. 그러나 이는 경북 56건(15%), 전남 44건(12%), 제주도 38건(10%), 경남 35건(10%)의 순을 보여, 해안을 끼고 있는 남쪽지방 4개도에 전체의 반에 가까운 173건(48%)이 지정되어 이들 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서울특별시·광역시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경기도 등에는 개발로 인한 반대급부에 의해 천연기념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시·도별 천연기념물 지정내용은 표 7과 같다. 이 중 동해를 끼고 있는 강원도에 68건(13%), 함경북도 59건(12%)과 서해안지역의 황해남도 50건(11%), 평안북도 49건(10%)이 지정되어 있어 이들 4개 시·도에 226건(46%)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정내역은 남한의 제주도와 남해안지역 3개도의 지정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북한 역시 우수한 자연유산이 해안지역에 간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보다는 다소 덜하나 도심지화 되어 있는 지역의 천연기념물 지정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4. 고찰

이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측면이 발견된다.

표 6. 남한 천연기념물 지역별·유형별 지정내용(2005년 12월 말 기준)

시도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계
서울특별시	1	9	-	-	10
부산광역시	1	5	1	-	7
대구광역시	-	1	1	-	2
광주광역시	-	-	1	-	1
인천광역시	2	5	3	-	10
울산광역시	-	3	-	-	3
경기도	4	9	2	-	15
강원도	4	15	9	3	31
충청남도	2	11	1	-	14
충청북도	2	17	3	-	22
전라남도	6	34	3	1	44
전라북도	1	24	2	-	27
경상남도	4	25	6	-	35
경상북도	3	47	5	1	56
제주도	4	18	11	5	38
전국일원	43	-	-	-	43
계	77	223	48	10	358

표 7. 북한 천연기념물의 지역별·유형별 지정내용(2005년 12월 말 기준)

시도	동물	식물	지리	지질	계
평양시	2	23	2	5	32
개성시	3	17	2	-	22
남포시	1	8	-	2	11
라진 선봉시	2	1	-	-	3
강원도	13	26	24	5	68
량강도	19	13	8	3	43
자강도	4	14	2	3	23
평안남도	11	12	3	10	36
평안북도	14	18	12	5	49
함경남도	10	25	8	8	51
함경북도	12	20	11	16	59
황해남도	11	25	5	9	50
황해북도	4	13	4	6	27
계	106	215	81	72	474

첫째,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 천연기념물의 지정건수는 남한 358건, 북한 474건으로 북한의 것이 남한보다 무려 116건 더 많은 지정내용을 보인다. 이는 일제시대 지정된 남·북한 전체 천연기념물 146건 중 남한지역이 3/4를 차지하는 110건, 북한지역이 1/4에 불과한 36건이었던 사실과 상반되는 측면이다. 이는 북한이 자원을 잘 발굴하여 천연기념물을 지정·보존한 측면도 있지만, 남한에서의 문화재 관리정책이 문화유산분야에 집중되어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개발에 의해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자원을 지금부터라도 발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의 지정내용을 자원유형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남한의 경우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이 223건(62%)을 차지하는 반면, 지질분야는 48건(13%)에 해당하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북한은 식물분야가 절반에 못 미치는 215건(46%)이고, 동물 106건(22%), 지질·지리 126건(3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한에 비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정책 추진 시 취약분야의 집중·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북한의 천연기념물에는 외국에서 도입된 동·식물 중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유전자원의 보존과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1900년대 이후 외래수종으로 들어온 금송·백합나무·히말라야시다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지만,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⁷⁾

넷째,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의 특징은 노거수·수림지·자생 북한지·자생지·희귀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과 노거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남·북한이 유사한 반면, 지정의 세부내용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노거수를 천연기념물로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목·당상목 등 우리민족의 토착신앙과 민족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오래 사는 은행나무·느티나무·소나무 3종이 남·북한 모두 노거수 천연기념물에서 4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수림지로 지정한 천연기념물의 경우 남한은 역사성이 있는 '마을 숲'을 발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반해, 북한은 경제성 있는 수림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비하여 지정건수가 적은 실정이다. 또한, 남한에서는 지정이 미흡한 유실수를 북한에서는 많이 지정하고 있는 측면은 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행정에 있어 시·서화 및 제례와 관련된 전통유실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동물천연기념물은 도래지·서식지·번식지와 곤충·어류·조류·포유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남한은 이동성이 강한 종(種)에 대해 지정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각각의 동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고유축양동물의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소·닭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는 점은 남한의 동물천연기념물 지정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방안이라고 파악된다.

여섯째, 남한에서 지정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지질과 지리천연기념물을 북한에서는 지정·보호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지질분야의 천연기념물 중 한 건의 지정도 없는 온천과 약수가 각각 18건, 11건 지정되어 있고, 지리분야를 천연기념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폭포·호수 등 81건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지정정책에 있어 지질자원을 적극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일곱째, 남·북한 천연기념물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잘 보존된 지역과 개발되어 도시화된 지역의 지정건수에서 많은 편차가 보인다. 예를 들어 남한은 제주도와 남해지역의 4개 시·도에 173건(48%)이 지정되어 있고, 북한은 동해와 서해에 인접한 4개 시·도에 203건(52%)이 지정되는 등 절반 정도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있다. 이는 도시화된 곳과 인접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자연유산이 훼손되어 사라져감을 시사하면서 해안지역 자연유산의 풍부함을 대변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N. 결론 및 제언

이상 남북한 천연기념물 지정내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아닌 남북한의 관련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천연기념물 세부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지정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발굴지정이 시급하다는 사실, 그리고 외래수목이지만 가치가 높은 노거수 등에 대한 보존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측면, 아울러 이상화와 관련된 북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출발시켜야 한다는 사실 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명승의 확대지정' 특히 우수 자연경관지의 명승지정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적·인문적 경관을 아우르는 조경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천연기념물의 실상을 좀더 상세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여전히 부족한 북한의 실태 역시 노정되었다. 이제 탈냉전의 새로운 시기를 맞아 남·북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속적 연구의 성과들이 밑거름이 될 때, 비로소 남·북 통일 후 천연기념물 관리정책이 온전히 통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주 1. 그동안 가려졌던 북한의 천연기념물 현황을 소개한 연구로는 박상철과 김창규(1995), 박종민(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문화재보호관계법제에 주목했으나, 현 시점에서 오래된 자료이며, 후자는 북한의 운영실상을 소개한 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남한과의 다양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성을 부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 주 2. 남·북한 관련제도에서 언급하는 천연기념물의 범위는 다소 상이하다. 즉, 남한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식물분야·동물분야·지질분야·천연보호구역 등이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식물분야·동물분야·지질분야·지리분야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제도에 의해 지정된 세부내용간의 상호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 주 3. 1913년 일본산림회(日本山林會)는 우리나라 고유수목 중 노수명목(老樹名木) 조사를 실시하여 은행나무 등 28주를 기록하였고, 1919년에는 전국적으로 한국의 노수명목이 조사된 바 있다. 당시에 조사된 수목은 소나무 등 64종 5,330주 이었고, 이 중 전설을 간직한 역사성이 있는 나무만도 1,705주나 되었다(김윤식, 1997: 21).
- 주 4. 남·북한 천연기념물 CD(우리의 천연기념물)는 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자료를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천연기념물 자료가 전부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에 제작한 남·북한 천연기념물 CD와 남·북한 천연기념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474건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주 5. '통라도 산뽕나무와 전나무'는 김일성이 1966년 4월 4일 식재한 나무로 수령이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나무의 설명 중에는 '대를 이어 잘 관리하면서 후대교양에 적극 이용...'의 구절이 들어 있다. 아울러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김일성이 직접 심은 '문수봉 이갈나무(잎갈나무)', 1950년 10월 10일 직접 심고 가꾼 '장자산 잣나무', 1958년 3. 31일 심은 '모란봉 잣나무와 잣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다.
- 주 6. 김일성은 '우리나라 식물들 가운데는 귀뚜나나무뿐 아니라 개뽕나무, 개살구나무, 개오동나무를 비롯하여 이름을 천하게 부르는 식물이 많은데 그런 이름을 다 고쳐야 한다.'라는 교시를 내렸다. 이 나무의 설명 중 '몸소 이름지어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귀중한 나무이므로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 주 7. 우리도 근대화과정에서 조성한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청주 플라타너스 길 등을 문화재보호법상의 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라져가는 외래수목에 대한 보다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국제생활사(1956) 조선중앙년감: 448-450, 북한.
2. 김윤식(1997) '97문화유산의해조직위원회 천연기념물보호세미나, 21.
3. 나명하, 홍윤순, 김학범(2007) 남·북한 천연기념물 관리제도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5(2): 71-80.
4. 리홍섭(1986) 지리상식백과 I, 북한.
5. 문화재청(2003) 천연기념물백서.
6. 문화재청(2004) 남·북한 천연기념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료.
7. 문화재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북한)·과학기술부(2006), 우리의 천연기념물(CD자료).
8.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1993)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편 I, II.
9. 박상철, 김창규(1995)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규, 한국법제연구원.
10. 박종민(2003) 북한의 천연기념물 관련 제도와 현황, 한국정원학회지 21(2): 40-51.
11. 장호수(2002)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원 고 접 수: 2007년 9월 27일
 최종 수정 본 접수: 2007년 12월 5일
 4 인 의 명 심 사 필